

(별 첨)

##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개정

### 1. 개정배경

-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대국민에게 알리고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신고인의 보험범죄신고 동기부여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추진

### 2. 개정내용

- (포상금 최고한도 증액) 기존 포상금 지급 최고한도(추가지급분 포함)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 「보험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준」 개정(안)

변경(전)	변경(후)
제9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최고한도는 <b>5억원</b> (추가지급분 포함)으로 한다.	제9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최고한도는 <b>10억원</b> (추가지급분 포함)으로 한다.

### 3. 적용시기

- 관련 규정개정 후 2016. 7. 1.부터 소급적용

첨 부 :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개정(안) 전문 1부

## [첨부 1]

### ■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2016.7.1.)	개 정 (2016.8.26)	비 고
제9조 【지급 기준】 ① 포상금의 최고한도는 <u>5억원</u> (추가지급분 포함)으로 한다.	제9조 【지급 기준】 ① 포상금의 최고한도는 <u>10억원</u> (추가지급분 포함)으로 한다.	· 포상금 최고한도 증액

## [첨부 2]

### ■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개정(안) 전문

제정 2009. 7. 7

개정 2010. 1.29

개정 2011.10.27

개정 2013. 6. 4

개정 2016. 7. 1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생명보험범죄방지위원회 규정」에 의거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인”이라 함은 보험유관기관 및 업계의 보험범죄방지사업 담당부서(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각 협회 회원사 포함)에 보험범죄행위 의심건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보험범죄”라 함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사취할 목적으로 고의적 행위를 하거나 보험사고를 불법한 방법으로 야기하는 각종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
  - 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3. “적발금액”이라 함은 사건관련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시점(기소, 송치시점)에 보험금 지급금액과 사건적발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금액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신고인의 보호】** 신고인에 관한 신상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과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한】** 포상금은 생명보험범죄방지 부서장협의회(이하 “부서장협의회” 라 한다)의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 【신고 접수】** 보험범죄의 신고사항은 신고인의 방문, 전화,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고사항이 불충분하여 보험범죄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신고사항이 막연하거나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경우

**제6조 【신고 처리】** ①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는 신고된 사항을 해당사로 이첩한다.

② 이첩을 받은 회원사는 기인지되어 조사중이거나 금융감독원에 기인지보고 되었는지의 여부 등 조사착수 여부를 이첩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손해보험협회 회원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 처리의 통보】** 회원사의 회신을 통해 조사진행 및 인지보고 사실이 확인된 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자에게 제12조에 의거하여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우편으로 통보한다. 다만, 신고인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서장협의회에 의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거쳐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된 경우
  2. 제1호의 경우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부서장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제2조에 의해 협회 이외의 기관에 신고된 사항이 해당 기관에서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공문으로 협회에 포상금 지급 요청 또는 관련사항이 통보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회사에 신고된 건에 관해서는 해당사에서 자체 지급하고 협회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사는 포상금 결정 후 협회에 포상금 지급업무에 한하여 그 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입금된 포상금액을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 【지급 기준】** ① 포상금의 최고한도는 10억원(추가지급분 포함)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제2조제3호의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별표 제1호>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단, 생명보험 관련 적발금액에 한정한다.

③ 보험범죄 신고건의 중요도 및 신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인의 경우 추가지급 금액은 <별표 제2호>에 의거하여 정한다.

1.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자

**제10조 【지급 절차】** 협회는 제9조에 따라 포상금액을 정하여 부서장협의회의 상정하고, 부서장협의회의 결정 후 보험범죄 공동조사기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신고포상금의 분담】** 포상금은 회원사별 적발금액의 비율에 따라 회원사가 분담하여 협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2.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3.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 조사, 수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경우
4.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조사의 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제13조 【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범죄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서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 【보칙】**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명보험범죄방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0. 1. 29 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의 제정 이전 보험범죄 신고건은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1. 10. 27 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의 보험범죄 신고건에 대한 포상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3. 6. 4 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의 보험범죄 신고건에 대한 포상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 7.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의 보험범죄 신고건에 대한 포상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제1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적발금액	포상금
20억원 이상	1,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0.5%
17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500만원
14억원 이상 ~ 17억원 미만	1,250만원
11억원 이상 ~ 14억원 미만	1,000만원
8억원 이상 ~ 11억원 미만	800만원
5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600만원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00만원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400만원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00만원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0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50만원
5천만원 미만	100만원

- 공동신고의 경우 포상금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분배시 1인당 최저포상금은 20만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

관련업계 종사자 추가지급 기준

[산정기준]

기본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최대 100%까지 인센티브 지급률을 산정 (실무자협의회 심의 후 부서장협의회 의결)

기본 인센티브	구체적 물증제시	적극적 수사 협조	보험범죄 적발규모	사회적 파급력
+ 20%	+ 20%	+ 20%	+ 20%	+ 20%

[평가방법]

주관사에서 제출한 자료(실무자협의회시 설명)를 근거로 다음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자의 점수를 평균하여 인센티브 지급률 결정(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구 분	S	A	B	C	D	E
기본 인센티브	+ 20%					
구체적 물증제시 (사진, 동영상, 관련서류 등)	+ 20%	+ 16%	+ 12%	+ 8%	+ 4%	0%
적극적 수사협조 (참고인 진술, 증인 출석 등)	+ 20%	+ 16%	+ 12%	+ 8%	+ 4%	0%
보험범죄 적발규모 (적발 인원, 적발 금액 등)	+ 20%	+ 16%	+ 12%	+ 8%	+ 4%	0%
사회적 파급력 (공중과 방송 보도 등)	+ 20%	+ 16%	+ 12%	+ 8%	+ 4%	0%

<별지 제1호>

보험범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일자		접수자		직위	
신 고 자		연 락 처			
신고 내용					
	의심자 성명		생년월일		
	의심자 주소		지급사유		
	관련병원				
해당사		담당자		연락처	
처리내용					
참고사항					

<별지 제2호>

보험범죄 신고처리 결과통지서

수신자 ○○○

귀하가 신고한 보험범죄에 관한 포상금 지급여부가 다음과 같이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지급여부 : 불가
2. 불가사유 :

년 월 일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실 실장 ○○○ (인)

문 의